

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 4]

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(제19조제1항 관련)

1.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규격·재질 및 색상

가. 규격

1) 표지판: 가로 1.2미터 × 세로 1미터 이상

2) 기둥: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미터 이상

나. 재질: 표지판 및 기둥은 철, 알루미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

다. 색상

1) 표지판 바탕: 노랑

2) 글씨: 검정색. 다만, "위험 시설 및 지역"은 빨간색으로 표시함.

2.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기재사항

